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및 의견제출 절차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0일
금융위원회

1.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김동기	700617 - *****	서울시 성북구 화랑로
조대현	750826 -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남로
김성규	710728 -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북성로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대상자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김동기	(주)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김동기는 2016.2.1. ~ 2016.3.9. 기간 중 디비손해보험(주)의 ‘내생애안심상해보험’ 등 12건(초회보험료 1백만원)의 손해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같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에게 총 8.5백만원을 모집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9조	과태료 140만원
조대현	서울중앙에셋(주)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조대현은 2016.10.20. ~ 2018.2.21. 기간 중 신한생명보험(주)의 “무배당 신한유니버설Plus종신보험II” 계약 36건(초회보험료 4.2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가 종신보험 상품을 은행의 저축상품 또는 노후대비 목적의 연금보험 상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보험안내자료를 사용하여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7조	과태료 2,530만원

처분 대상자	처분 원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김성규	서울중앙에셋(주)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김성규는 2016.10.20.~2018.2.23. 기간 중 신한생명보험(주)의 “무배당 신한유니버설Plus종신보험II” 계약 35건(초회보험료 4.3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가 종신보험 상품을 은행의 저축상품 또는 노후대비 목적의 연금보험 상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보험안내자료*를 사용하여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7조	과태료 2,450만원

나. 유의사항

- 위반사실, 과태료 부과금액 등에 관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바, 관보 공고일로부터 24일까지 금융위원회 보험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처분에 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며, 과태료 부과 금액이 확정됩니다.
- 관보 공고일로부터 24일까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나,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습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2100-296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